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5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 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여대상자

1) 명예시민 : 총 21명 (남 14, 여 7) ※세부명단 별첨

가) 국적별 : 14개국 21명

(미국 3, 브라질 1, 볼리비아 1, 콜롬비아 1, 독일 4, 프랑스 1, 스위스 1, 이탈리아 1, 네팔 1, 중국 2, 싱가포르 1, 대만 2, 앙골라 1, 몽골 1)

나) 분야별 : 외교 6, 교육 2, 경제 6, 문화·관광 등 기타 7

※ 서울 거주자 18명, 해외 거주자 3명

나. 추진경과

- 2016. 7.04~ 7.29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총 26명)
- 2016. 8.01~ 8.09 공적 및 거주기간, 출입국위반 등 조회
- 2016. 8.10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26명 중 21명 선정)

다. 수여예정일

- 2016. 10. 28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

라.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가운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2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시는 1958년 관련 제도¹⁾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743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4년 21명, 2015년 25명, 2016년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음(참고자료 1).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공단체와 사회단체의 장, 30인 이상의 시민에 의해 추천받은 26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과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국내 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서울시정과 의 연관성이 부족한 5명을 제외한 21명을 최종적으로 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이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수여 대상자 21명은 모두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판단됨(참고자료 2).

1)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와 같은 명예시민증 제도로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향후에도 공적 및 거주기간, 범죄사실 확인, 시정과의 연계성 등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의 취지와 시민증 자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아울러, 최근에 새롭게 선정되는 명예시민의 주요 공적이 투자 유치나 경제, 관광분야 등에 한정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해 향후 문화, 스포츠, 환경, 인권 등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

- 우리 조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서울역사박물관·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각 자치단체가 명예시민 혹은 명예도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명예시민 제도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입국시편의 제공 등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의 당초 취지인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 서울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고, 이들이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극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시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 최근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범법 사실 등 사전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명예시민의 권위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SNS의 적극적 활용이나 각 자치구 협조와 같이 대상자 추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연도별

구 분	총 계	외국귀빈	시정(국가)유공	국제대회 참석	기 타
총 계	743	134	439	163	7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4	5
명예시민증(소계) (1972~)	607	106	370	129	2
1973~1980	155	6	19	129	1
1981~1990	13	5	7	-	1
1991~2000	135	7	128		
2001	14	3	11	-	-
2002	11	4	7	-	-
2003	9	2	7	-	-
2004	23	11	12	-	-
2005	38	27	11	-	-
2006	27	10	17	-	-
2007	13	2	11	-	-
2008	16	1	15	-	-
2009	17	1	16	-	-
2010	42	2	40	-	-
2011	17	3	14	-	-
2012	12	1	11	-	-
2013	16	0	16	-	-
2014	21	9	12	-	-
2015	25	9	16	-	-
2016	3	3			

□ **국적별 : 92개국 743명**

대륙	국 적		계 (단위:명)	성 별		대륙	국 적		계 (단위:명)	성 별	
				남	여					남	여
아프리카 (44)	1	가나	2	2	0	유 럽 (215)	10	벨기에	11	6	5
	2	나이지리아	6	6	0		11	벨로루시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4	1		12	불가리아	1	1	0
	4	레소토	1	1	0		13	스웨덴	6	5	1
	5	사우디아라비아	4	4	0		14	스위스	3	2	1
	6	세네갈	2	2	0		15	스코틀랜드	1	0	1
	7	수단	11	11	0		16	스페인	7	4	3
	8	알제리	1	1	0		17	슬로바키아	2	2	0
	9	앙골라	1	1	0		18	아이슬란드	1	0	1
	10	에티오피아	4	4	0		19	아일랜드	4	3	1
	11	이집트	1	1	0		20	영국	29	19	10
	12	콩고민주공화국	3	3	0		21	오스트리아	5	4	1
	13	차드	1	1	0		22	우크라이나	2	2	0
	14	코트디부와르	2	2	0		23	이탈리아	14	10	4
아시아 (179)	1	네팔	4	3	1		24	체코	3	3	0
	2	대만	6	6	0		25	터키	14	13	1
	3	말레이시아	4	3	1		26	폴란드	4	4	0
	4	몽골	5	4	1		27	프랑스	18	13	5
	5	베트남	7	7	0		28	핀란드	3	2	1
	6	스리랑카	1	0	1		29	헝가리	5	5	0
	7	싱가포르	7	6	1		1	과테말라	2	1	1
	8	인도	3	2	1		2	도미니카	2	1	1
	9	인도네시아	6	5	1		3	멕시코	13	10	3
	10	일본	45	36	9		4	바하마	1	0	1
	11	중국	39	36	3		5	베네수엘라	2	0	2
	12	캄보디아	1	1	0		6	벨리즈	1	0	1
	13	타이티	1	0	1		7	볼리비아	1	0	1
	14	태국	17	14	3		8	브라질	5	4	1
	15	파키스탄	1	1	0		9	아르헨티나	4	2	2
	16	필리핀	13	10	3	10	에쿠아도르	1	0	1	
	17	우즈베키스탄	6	3	3	11	엘살바도르	1	1	0	
	18	카자흐스탄	10	9	1	12	온두라스	2	1	1	
	19	키르기스스탄	3	2	1	13	우루과이	1	0	1	
중 동 (8)	1	이스라엘	2	1	1	14	칠레	6	5	1	
	2	요르단	1	1	0	15	코스타리카	4	2	2	
	3	이라크	3	3	0	16	콜롬비아	4	3	1	
	4	이란	2	2	0	17	트라이니다드토바고	1	0	1	
유 럽 (214)	1	아제르바이잔	1	1	0	18	파나마	1	0	1	
	2	그리스	8	6	2	19	파라과이	1	0	1	
	3	네덜란드	10	6	4	20	페루	11	9	2	
	4	노르웨이	5	3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5	덴마크	5	4	1	1	미국	192	148	44	
	6	독일	37	33	4	2	캐나다	19	14	5	
	7	러시아	12	11	1	1	호주	11	7	4	
	8	루마니아	2	2	0	2	뉴질랜드	9	8	1	
	9	몰타	1	0	1	3	파푸아뉴기니	1	0	1	
						북 미 (211)					
						오세아니아 (21)					

〈참고자료 2〉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총 10명(내부 3, 외부 3)**

- 시의원 : 김영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내부위원 : 행정1부시장(위원장),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 국제협력관
※ 간사 : 국제교류담당관
- 외부위원 : 6명

연번	성명	현직	경력
1	선미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국제교류자문단 · 전 주한미국공무원 상임고문 · 전 청와대 해외언론 비서관
2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 미래연구 센터	· 서울연구원 센터장
3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4	이준	서울관광마케팅 관광MICE본부	· 서울관광마케팅(주) 본부장
5	이해응	외국인명예부시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6	저우위보	2015년 서울시 명예시민	·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장